

「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」 ‘17년 2학기 선발요강 (학생용)

I 선발요건

선발요건	신청자별 요건내용 ※ 중복 신청 불가(택 1 신청)		
	농업후계	농업인자녀	
지원금액 (한 학기 1인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0만원 (정액지급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금 범위 내 최대 200만원, 150만원, 100만원, 50만원 (정액지급) 	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(첨부자료#4 참조) ※ 단,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제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업인의 자녀 (학과전공 제한 없이) 대학 재학생 	
지원대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중 농업계 대학 (첨부자료#4 참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※ 단, 장학금 지원 배정 제한 대학 제외 	
선발학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식품계열학과 (첨부자료#4 참조) ※ 타학과 소속 농식품계열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(단, 영농창업특성화대학(학과)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과선발 제한 없음 	
농업 종사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모 또는 본인 농업종사 여부 관계없음 ※ 단,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우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모가 반드시 농업종사 ※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	
선발성적/ 이수학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7.1학기 평점 80점 이상(정규학기 기준, F학점 포함), 12학점 이상(정규학기 졸업예정자(4학년) : 3학점 이상) 이수자 ※ 단,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성적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졸업예정자(4학년) : 3학점 이상) 이수자 	
소득분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득분위 제한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7.1학기 소득분위 0-8분위만 신청가능 ※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(단,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 학기 소득분위 적용) ※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	
지원단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대 8개학기(2년간+2년간) * 3년차: 영농지 및 활동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자탈락 합격자는 향후 2년간 추가 계속지원 ※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(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대 8개학기 *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	
계속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학기 영농활동* 30시간 이상이수 * 경작, 농업경영, 영농실습 및 체험, 농촌현장인턴, 농촌봉사활동 성적(80점이상, 12학점이상)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휴학(군휴학 포함), 편입,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업인 자녀 성적(80점이상, 12학점이상), 소득(0-8분위)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	
심사방법	정량지표와 계획서 평가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교 추천자(정량지표 고득점자 순) 중 학교별 배정 범위내에서 선발 	
	영농 계획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신규자)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활동(30시간이상)을 포함한 영농계획(3개이상)에 대한 평가 (계속자) 최초작성 후 1년 이내 1회 수정 제출 가능(수정 변경된 계획서로 재심사)
	실적 보고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학기 영농활동(30시간이상)한 실적보고서 평가(증빙서류 제출) ※ 영농활동이 30시간미만, 미인정 실적일 경우 non-pass(탈락)
기타사항	3년차 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년간의 영농계획서 이행여부 및 달성도 심사 	
	휴학지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휴학예정자(군휴학 포함), 복학예정자는 복학예정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 신청가능(계속자 자격상실 됨) 	
	편입자 (전공심화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편입자(전공심화자)는 편입된(전공심화 입학한) 학교의 2017.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※ 타대학 편입자는 기존대학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, 편입한 학교에서 신규 신청해야 함 	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액장학생,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자,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(제적, 자퇴, 징계자,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,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) 	
반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액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(부분반납 불가) ※ 단, 질병,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과 협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(부분반납 불가) ※ 단, 등록금 초과자는 등록금 초과금액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	

II 신청기간

□ 신청(구비서류 업로드 등) 기간 : **17.7.3(월) 09:00~7.13(목) 17:00**

III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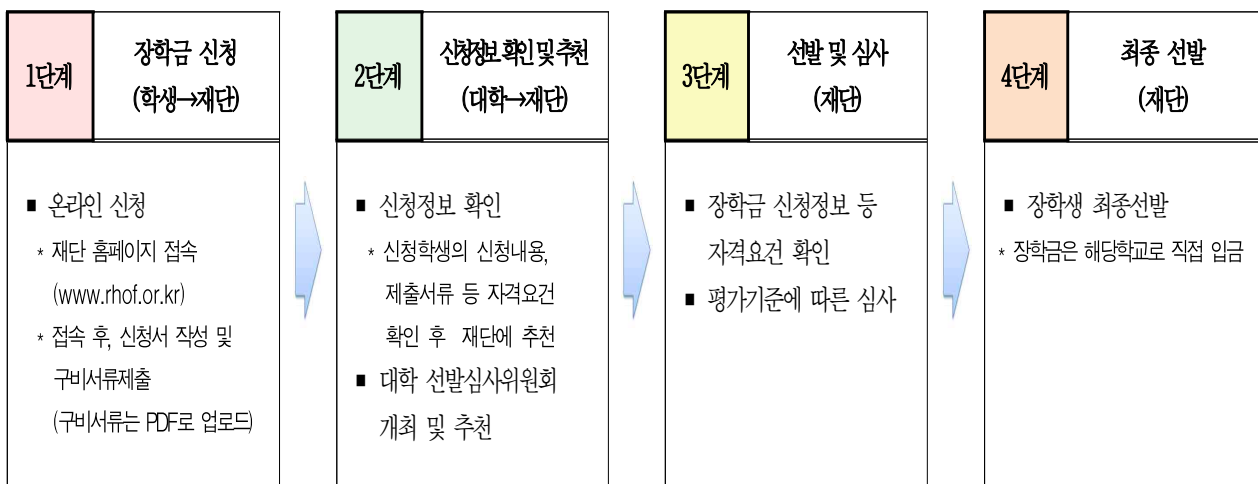
□ 신청방법(학생→재단)

신청자 본인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 접속(인증절차 후) → 장학금 신청하기 → 구비서류 업로드
→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→ 신청완료

【주의사항】

-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
- 신청 후,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
- 영농후계 장학금 신청시 : “농림축산식품부” 로 신청
- 영농후계 장학생은 영농계획서를 온라인 신청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함
※ 신청자 구비서류 안내는 첨부자료#1 참조

□ 선발절차



IV 장학금 지급 및 반납

1. 지급방법 (재단→학교→학생)

- (재단→대학)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
- (대학→장학생)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

2. 장학금 반납

가. 반납대상

- (전액장학생) 교내·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
- (등록금초과자) 교내·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
- (기타사항)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
 - 제적, 자퇴, 징계자, 휴학자 등 학적변동자
 -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등

* 자세한 계속장학생 자격상실기준은 'V. 자격상실 기준' 참조

나. 반납방법 (학생→학교→재단)

구분	재단 장학금 지급 전	재단 장학금 지급 후
영농후계		■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(부분반납 불가)*
농업인 자녀	■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	■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(부분반납 불가)* ※ 단, 등록금 초과자는 등록금 초과금액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**

* 일부지급 또는 부분반납 절대 불가

** 국가장학금(1) 외의 교내·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타 교내·외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(우리재단 장학금 부분반납 불가)

※ 단, 질병,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과 협의

V 주요 변경사항 및 지침

1. 주요 변경사항

구분	영농후계장학금		농업인자녀장학금	
	종전	변경	종전	변경
장학금액	■ 해당없음	■ 해당없음	■ 최대 150만원, 100만원, 50만원 ※ 등록금 범위 내 한 학기, 1인당 기준	■ 최대 200만원 , 150만원, 100만원, 50만원
장학생 배분기준	■ 배분기준 없음	■ 대학별 재학생 수, 사업성과(관련분야 진출 비율 등)을 고려하여 신규 장학생 배분 ※ '18.1학기부터 시행	■ 해당없음	■ 해당없음

2. 자격상실 기준

자격상실 기준내용	해당 장학종류		처리기준
	영농후계	농업인자녀	
▪ 이수 학점 미달자	○	○	<u>자격 상실</u>
▪ 이수 성적 미달자	○	○	
▪ 영농활동(30시간이상) 미이수자	○	-	
▪ 3년차 심사 탈락자(최초 선발후 2년간의 영농실적 이행여부 및 달성도 심사)	○	-	
▪ 소득분위(0~8분위) 미충족자	-	○	
▪ 구비서류 불충분(미비) 제출자	○	○	
▪ 제적, 자퇴, 징계자, 非 영농창업특성화학과 전과자(영농후계), 휴학생(일반휴학, 군휴학 포함) , 편입생, 미등록자 등 학적변동자	○	○	
▪ 전액장학생,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	○	○	
<p>※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</p> <p>※ 자격상실자 발생 시 해당 대학 계속 장학생의 인원(TO)은 자동 소멸되며, 상실인원은 신규 신청자를 심사하여 고득점 순(농업인자녀는 추천 우선순위 순)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</p> <p>※ 기타 장학생 선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처리 됨</p>			

【첨부자료#1】 ※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하여 업로드 해야함

신청자(학생본인)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

구분	장학종류별			
	영농후계		농업인자녀	
	신규자	계속자	신규자	계속자
재학증명서 원본 1부 * 복학예정자는 제적증명서 원본 1부 (단, 복학예정일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인정)	○	○	○	○
부모(또는 본인)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* 증빙서류 안내 참조	△ ¹⁾	×	○ ²⁾	
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* 농업인과 학생 본인관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	△ ³⁾	×	○	
성적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별도 제출하지 않음 ■ 교직원이 성적확인 후 최종 입력예정 			

- 「○」 표는 반드시 제출, 「△」 표는 선택제출, 「×」 표는 제출하지 않음
-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**‘17.5.26(금)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**되며,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 제출해야 함
- * **발급일자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, 발급일자 표기가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성명 및 서명(부서 연락처),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**토록 함
- * **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, 발행처의 직인이 있는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**

※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.

1) 부모(또는 본인)의 농업인 증빙서류 제출 시, 가산점 부여 ⇒ 농업인증빙서류 제출자는 **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**해야 인정
 2)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만 인정(본인의 농업인 증빙서류는 미인정)
 3)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학생 본인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

농업인 증빙서류 안내

구 분	구비서류	발행처
농 업 (축산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*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농업인확인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한우·육우 등 양육업) 축산업(가축사육업) 등록증 1부와 개체확인 각 1부 ■ (양돈·양계업) 축산업(가축사육업)등록증 1부와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축산업등록증) 관할 시·군·구 ■ (개체확인) 축협 ■ (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) 각 거래처 ※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※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(또는 사료거래확인서)는 1년 이상의 실적이 기재되고,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
임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*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농업인확인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산림조합원 증명서 및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할 시·군 산림조합

- 농업인은 장학금 공고일을 기준으로 모든 증빙서류가 1년 이상 현재까지 계속 종사자에 한하여 인정
- * 발급 서류에 반드시 1년 이상 농업종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
- *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축산업(가축사육업)등록증 1부(앞쪽, 뒤쪽 모두 스캔)와 개체확인 각 1부씩 제출하며, 개체확인서는 반드시 발급일자가 표기되어야 함
- * **“농지원부”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**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
- 임업인의 실적증명서는 거래처에서 증명 받아 제출하면 인정함
-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**‘17.5.26(금)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**
- 모든 구비서류는 상기 명기된 발행처의 직인 날인된 서류만 인정되오니, 발행처의 직인이 있는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 후 업로드 하여야 함

※ 위 서류 중,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

※ 농업인의 인정은 증빙서류에 16.6.27이전부터 농업에 종사 또는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

※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